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321

발의연월일: 2022. 1. 10.

발 의 자: 김철민·강선우·권인숙

김수흥 • 김영배 • 김정호

도종환 • 민형배 • 박 정

서동용 • 안민석 • 오영환

이정문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.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며,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중도입국·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,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

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·언어교육·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교육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).
- 나.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제4항).
- 다.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제6항).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(이하 "다문화학생"이라 한다)의 교 육기회 보장·언어교육·학생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
- 2.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(이하이 조에서 "다문화 친화적 환경"이라 한다)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

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학급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다문화교 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1.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
- 2. 다문화학생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
- 3.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
- 4.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5. 다문화교육을 위한 조사 연구
- 6. 그 밖에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⑦ 제6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 기준 및 절차, 지정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조	현 행	개 정 안
2.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제28조의2(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(이하 "다문화학생"이라 한다)의 교육기회 보장·언어교육·학생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입학예정인 아
		구성원으로서 입학예정인 아 동 또는 학생 2.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서 입학예정인 아동 또는 학 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・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(이하 이 조에서 "다 문화 친화적 환경"이라 한다) 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학급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현황 등을 고려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23 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 하는 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지정·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
- 1.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
- 2. 다문화학생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
- 3.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연수
- 4.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을위하여 필요한 사항
- 5. 다문화교육을 위한 조사·연<u>구</u>
- 6. 그 밖에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① 제6항에 따른 다문화교육지 원센터의 설치·지정 기준 및 절차, 지정 기간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